##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92

발의연월일: 2021. 2. 18.

발 의 자:위성곤·서삼석·양정숙

송재호・홍성국・이규민

윤재갑 · 신동근 · 이개호

박재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상해·질병·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 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형 수 령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6항 중 "일시금"을 각각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 ③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	4
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	
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u>일시금</u> 으로 지급한다.	연금 또는 일시금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6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유족	
에게 <u>일시금</u> 으로 지급한다.	<u>연금 또는 일시금</u>
	<b>.</b>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